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7-//호

「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 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9월 1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지침」에 근거하여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농가 규모를 확대하고, 시설 사용료를 도내 운영 중인 타 시·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비교 조정(인하)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.

2. 주요 개정내용

가.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돼지사육농가 규모를 확대(안 제4조)

－ 현행 4,000제곱미터 미만 ⇒ 개정안 5,000제곱미터 미만

나. 처리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에 도움(안 별표)

－ 허가대상 : 현행 16원/L ⇒ 개정안 12원/L

－ 신고대상 : 현행 8원/L ⇒ 개정안 6원/L

－ 규제미만 : 현행 4원/L ⇒ 개정안 3원/L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회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[www. sangjuCouncil.go.kr](http://www.sangjuCouncil.go.kr))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내용	비고